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12.8.)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 목 차

1. 검토경과	1
2.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1
가. 총괄	1
나. 세입예산	2
다. 세출예산(기능별)	3
라. 세출예산(부서별 일반회계)	4
마. 세출예산(부서별 기타특별회계)	5
바. 세출예산(성질별)	6
3. 부서별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기획예산담당관	7
<input type="checkbox"/> 전략담당관	9
<input type="checkbox"/> 행정과	11
<input type="checkbox"/> 인구교육과	12
<input type="checkbox"/> 민원소통과	14
<input type="checkbox"/> 경제기업과	15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과	17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과	18
<input type="checkbox"/> 복지정책과	19
<input type="checkbox"/> 행복나눔과	20
<input type="checkbox"/> 보건정책과	21
<input type="checkbox"/> 건강증진과	22
<input type="checkbox"/> 읍·면사무소	23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가. 총괄 - (예산안 P9)

(단위: 천 원)

회계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계	836,942,453	822,608,962	14,333,491	1.74
일반회계	775,698,144	762,744,761	12,953,383	1.70
특별회계	61,244,309	59,864,201	1,380,108	2.31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3억 3,349만 1천 원이 증액(1.74%)된 8,369억 4,24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는 7,756억 9,81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 5,338만 3천 원이 증액(1.70%) 되었으며,
- ▶ 특별회계는 612억 4,43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8,010만 8천 원이 증액(2.31%) 되었음.

## 나. 세입예산(일반 + 기타특별회계) - (예산안 P10)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b>합 계</b>	<b>802,356,490</b>	<b>787,764,081</b>	<b>14,592,409</b>	<b>1.85</b>
<b>지 방 세 수 입</b>	40,982,547	40,982,547	0	0.00
보 통 세	40,352,291	40,352,291	0	0.00
지 난연도수입	630,256	630,256	0	0.00
<b>세 외 수 입</b>	<b>25,748,768</b>	<b>24,779,777</b>	<b>968,991</b>	<b>3.91</b>
경상적세외수입	11,368,666	12,148,797	-780,131	-6.42
재산 임대수입	394,969	511,650	-116,681	-22.80
사 용 료 수 입	2,788,374	2,856,824	-68,450	-2.40
수 수 료 수 입	3,005,300	4,005,300	-1,000,000	-24.97
사 업 수 입	55,000	55,000	0	0.00
징수교부금수입	911,746	911,746	0	0.00
이 자 수 입	4,213,277	3,808,277	405,000	10.63
임시적세외수입	12,449,760	11,854,850	594,910	5.02
재산 매각수입	239,410	132,000	107,410	81.37
자치단체간부담금	217,500	30,000	187,500	625.00
보조금반환수입	2,800,000	2,500,000	300,000	12.00
기 타 수 입	9,192,850	9,192,850	0	0.00
행정제재·부과금	830,342	576,130	254,212	44.12
지 난 연 도 수 입	1,100,000	200,000	900,000	450.00
<b>지 방 교 부 세</b>	<b>323,797,000</b>	<b>321,717,000</b>	<b>2,080,000</b>	<b>0.65</b>
<b>조 정 교 부 금 등</b>	<b>31,456,415</b>	<b>29,515,000</b>	<b>1,941,415</b>	<b>6.58</b>
<b>보 조 금</b>	<b>265,949,034</b>	<b>257,630,658</b>	<b>8,318,376</b>	<b>3.23</b>
<b>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b>	<b>114,422,726</b>	<b>113,139,099</b>	<b>1,283,627</b>	<b>1.13</b>
임 여 금	49,212,428	49,038,481	173,947	0.35
전년도 이월금	5,468,468	5,468,468	0	0.00
융자금원금수입	2,608,652	1,500,000	1,108,652	73.91
전 입 금	57,133,178	57,132,150	1,028	0.0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34,585,963천원)

## 다. 세출예산(기능별) - (예산안 P15)

(단위: 천 원)

부 서 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b>합 계</b>	<b>802,356,490</b>	<b>787,764,081</b>	<b>14,592,409</b>	<b>1.85</b>
일반공공행정	96,513,619	73,816,079	22,697,540	30.75
공공질서및안전	8,936,652	8,235,640	701,012	8.51
교육	6,349,955	6,217,818	132,137	2.13
문화및관광	37,911,169	37,739,269	171,900	0.46
환경	62,190,652	62,480,934	△290,282	△0.46
사회복지	171,819,261	177,487,153	△5,667,892	△3.19
보건	11,108,741	10,733,771	374,970	3.49
농림해양수산	166,896,323	162,031,843	4,864,480	3.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1,898,631	36,182,597	5,716,034	15.80
교통및물류	32,924,744	32,005,666	919,078	2.87
국토및지역개발	78,525,526	72,588,255	5,937,271	8.18
예비비	8,381,260	27,199,794	△18,818,534	△69.19
기타	78,899,957	81,045,262	△2,145,305	△2.65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34,585,963천 원)

-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2025년 당초 예산액보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30.7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예비비는 69.19% 감소하였음.

라. 세출예산(부서별 일반회계) - (예산안 P22)

(단위: 천 원)

부 서 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b>합 계</b>	775,698,144	762,744,761	12,953,383	1.70
의회운영위원회	1,301,197	1,301,197	0	0.00
산업건설위원회	331,435,704	322,269,082	9,166,622	2.84
<b>총 무 위 원 회</b>	<b>442,961,243</b>	<b>439,174,482</b>	<b>3,786,761</b>	<b>0.86</b>
기획예산담당관	45,427,564	38,774,643	6,652,921	17.16
전략담당관	33,472,454	32,734,454	738,000	2.25
행정과	82,338,446	84,462,433	△2,123,987	△2.51
인구교육과	23,671,036	23,571,899	99,137	0.42
민원소통과	2,402,505	2,464,012	△61,507	△2.50
재무과	4,334,083	4,334,083	0	0.00
경제기업과	44,706,176	38,992,142	5,714,034	14.65
문화예술과	16,514,201	16,592,301	△78,100	△0.47
관광진흥과	6,549,289	6,313,064	236,225	3.74
복지정책과	26,377,288	28,909,748	△2,532,460	△8.76
행복나눔과	132,988,455	137,883,521	△4,895,066	△3.55
보건소	11,694,074	11,560,224	133,850	1.16
읍면	12,485,672	12,581,958	△96,286	△0.77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34,585,963천 원)

-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37억 8,676만 1천 원이 증액(0.86%)된 4,429억 6,124만 3천 원으로 편성됨.

마. 세출예산(부서별 기타특별회계) - (예산안 P9, P24)

(단위: 천 원)

회 계 명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6,658,346	25,019,320	1,639,026	6.55
<b>총 무 위 원 회</b>	<b>12,507,354</b>	<b>12,482,922</b>	<b>24,432</b>	<b>0.20</b>
경 제 기 업 과	11,418,339	11,418,339	0	0
복 지 정 책 과	1,089,015	1,064,583	24,432	2.29
<b>산업건설위원회</b>	<b>14,150,992</b>	<b>12,536,398</b>	<b>1,614,594</b>	<b>12.88</b>
환 경 과	5,018,341	4,671,346	346,995	7.43
건 설 교 통 과	3,963,307	3,789,360	173,947	4.59
농 업 축 산 과	5,169,344	4,075,692	1,093,652	26.83

-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443만 2천원이 증액(0.20%)된 125억 735만 4천원으로 편성됨.

## 바. 세출예산(성질별) - (예산안 P25)

(단위: 천 원)

부 서 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356,490	100.00	787,764,081	100.00		14,592,409	1.85
인건비	87,066,710	10.85	89,519,661	11.36	△2,452,951	△2.74	
물건비	50,735,626	6.32	50,640,895	6.43	94,731	0.19	
경상이전	323,247,617	40.29	321,255,986	40.78	1,991,631	0.62	
자본지출	257,548,220	32.10	247,710,046	31.44	9,838,174	3.97	
융자및출자	4,033,880	0.50	4,033,880	0.51	0	0.00	
내부거래	61,905,488	7.72	31,100,040	3.95	30,805,448	99.05	
예비비및기타	17,818,949	2.22	43,503,573	5.52	△25,684,624	△59.04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34,585,963천 원)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률을 보면 내부거래가 99.0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59.04% 감소 하였음.

### 3.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

#### □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예산서 P133)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45,427,564	38,774,643	6,652,921	17.16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66억 5,292만 1천원이 증액(17.16%)된 454억 2,756만 4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예비비 ⇒ **△18,818,534천원**
- 보조금 반환 ⇒ **△4,500,000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 **30,000,000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예비비 (p134, p11)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li><li>○ [사업비] 8,381,260천원(군 8,381,260) ▶ <b>18,818,534천원 감</b></li><li>○ [사업내용]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li><li>○ [증감사항] 재정수요 대비 예산액 감조정</li></ul>
검토의견	☞ 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함.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b>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재정 운용의 비</b>

	<p><u>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u>으로 편성 규모의 적절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p> <p>☞ {참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 (단위: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2024년 당초예산</th><th>예비비 결정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불용액</th></tr> </thead> <tbody> <tr> <td>43,819,180</td><td>642,836,</td><td>625,820</td><td>0</td><td>17,015</td></tr> </tbody> </table> <p>- 2024년 당초예산에 43,819,18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정액은 642,836천원이며 <b>실 집행액은 625,820천원(1.43%)에 불과함.</b></p>	2024년 당초예산	예비비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43,819,180	642,836,	625,820	0	17,015
2024년 당초예산	예비비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43,819,180	642,836,	625,820	0	17,015							

사업명	차입금 이자상환 및 보조금 반환 (p134, p1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국고·도비 보조금 사용 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li> <li>○ [사업비] 3,500,000천원(군 3,500,000) ►<b>4,500,000천원</b> 감</li> <li>○ [사업내용]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li> <li>○ [증감사항] 실수요액으로 감조정</li> </ul>
검토의견	<p>☞ 2025년 당초예산에 차입금 이자상황 및 보조금 반환에 <b>8,000,000천원을 편성하였음. 실제 반환 예정 금액인 3,500,000천원</b> 보다 <b>과잉편성(228%)</b> 한 것은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p> <p>☞ 또한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p>

사업명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p134, p1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li> <li>○ [사업비] 30,000,000천원(군 30,000,000) ►<b>순증</b></li> <li>○ [사업내용]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li> </ul>
검토의견	<p>☞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음.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수단이지만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과도한 전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저하 등 문제점이 따를 수 있음.</p> <p>☞ 전출 기준의 명확화,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p>

## □ 전략담당관

<세출예산>(예산서 P137)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33,472,454	32,734,454	738,000	2.25

○ 전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 3,800만원이 증액(2.25%)된 334억 7,245만 4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지방소멸대응 연계 공모 기획 ⇒ △47,000천원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800,000천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 △8,000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p137, p2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적] 수도권 은퇴자 등 지속적인 지방 이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li><li>○ [사업비] 20,260,000천원(국 8,414,000, 도 1,800, 군 11,844,200) <b>▶ 800,000천원 증</b></li><li>○ [사업내용] 단독주택지 47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건립, 공원 및 내부도로 조성 등</li><li>○ [증감사항] 지역활력타운 조성(토목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li></ul>
검토의견	☞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은퇴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개발 프로젝트이며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 모델을 도입하고 있음.

- ☞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크게 청년 창업형과 은퇴자 마을형으로 나뉨.

청년 창업형 (7)	충북 증평군, 충남 부여군, 전남 강진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예천군, 전북 김제시, 경남 사천시
은퇴자 마을형 (10)	<u>경남 거창군</u> , 강원 영월군, 충남 금산군, 전남 구례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지식IN거창아로리타운)

- 위치: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개발면적: 약 49,246m<sup>2</sup>(80필지)
- 주요시설: 단독주택부지 47필지, 타운하우스 16세대, 공용시설 등

## 행정과

<세출예산>(예산서 P141)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82,338,446	84,462,433	△2,123,987	△2.51

-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21억 2,398만 7천원이 감액(△2.51%)된 823억 3,844만 6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선진행정 해외연수 ⇒ △30,000천원 예산액 대비 30% 감
-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 ⇒ △20,000천원 전액삭감
- 인건비 ⇒ △2,016,653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지역정보화 운영 (p142, p30)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li> <li>◦ [사업비] 0원 <b>▶전액삭감</b></li> <li>◦ [사업내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실명인증</li> <li>◦ [증감사항] 사업 미시행에 따른 감 조정 ※ <u>행정안전부 본인확인 통합인증 서비스인 Any-ID 구축예정(26년)</u></li> </ul>
검토의견	<p>☞ 행정안전부의 Any-ID는 사용자가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임. 이 사업은 2024년 1월에 발표되어 사업내용과 진행여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25년도에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함.</p>

## 인구교육과

<세출예산>(예산서 P145)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23,671,036	23,571,899	99,137	0.42

○ 인구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9,913만 7천원이 증액(0.42%)된 236억 7,103만 6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50,000천원**
- 청년친화도시 사업 ⇒ **125,000천원**
-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179,137천원**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 **△115,000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성립전] 청년친화도시 사업 (p146, p39)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구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li> <li>○ [사업비] 500,000천원(국 250,000, 도 125,000, 군 125,000)  <b>▶ 125,000천원 증</b></li> <li>○ [사업내용] 지역 특성 반영 청년정책 지원</li> <li>○ [증감사항]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교부</li> </ul>
검토의견	⇒ 연구 용역비 중 “아카이빙플랫폼” 용역이 있음. 아카이빙 플랫폼에도 연구 데이터, 디지털 문화유산, 웹 아카이빙,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아카이빙 등 종류가 많은데 이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요함.

사업명	<b>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경비 (p148, p42)</b>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li> <li>◦ [사업비] 179,137천원(군 179,137) ► <b>연례 반복사업</b></li> <li>◦ [사업내용]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 교과서 대금 등 지원</li> <li>◦ [증감사항] 법정 부담금</li> </ul>
검토의견	<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2에 따른 법정 경비 부담임.</p> <p>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 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p>

사업명	<b>1인 1예술 특화교육 (p148, p44)</b>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청소년들의 밴드 예술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의 장 구축</li> <li>◦ [사업비] 79,000천원(군 79,000) ► <b>47,000천원 증</b></li> <li>◦ [사업내용] 청소년 문화의집 밴드실 조성 및 악기구입</li> <li>◦ [증감사항] 밴드실 방음시설 보강, 악기 추가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특별교부금</li> </ul> </li> </ul>
검토의견	<p>☞ 거창군은 2024년 7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3년간 매년 30억 원 이상의 특별교부금 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게 됨.</p> <p>☞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화된 교육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혁신 ▲ 유학생을 유치하는 로컬유학 교육마을 조성 ▲인접 지역을 연합해 함께 교육 받는 캠퍼스형 공동학교 ▲경남의 1차 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모델과 연계 등임</p> <p>☞ 시범지역 중 선도지역은 3년간 운영 후에 교육부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b>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정식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b></p>

## 민원소통과

<세출예산>(예산서 P151)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2,402,505	2,464,012	△61,507	△2.50

- 민원소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50만 7천원이 감액(△2.50%)된 24억 250만 5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 △8,000천원
- 친절콘테스트 심사수당, 인센티브 ⇒ △2,800천원
- 지적자료 관리 ⇒ △10,100천원
- 토지정보 관리 ⇒ △13,808천원
- 지적재조사 관리 ⇒ △12,419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민원행정 시책추진 (p151, p4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군민 공감 민원 시책추진에 따른 경비</li> <li>○ [사업비] 700천원(군 700천원) ►12,100천원 감</li> <li>○ [사업내용] 민원사무 운영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li> <li>○ [증감사항] 행사 미개최</li> </ul>
검토의견	☞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는 직원 사기를 복돋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미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예산서 P157)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56,124,515	50,410,481	5,714,034	14.65
일반회계	44,706,176	38,992,142	5,714,034	14.65
특별회계	11,418,339	11,418,339	0	0

-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1,403만 4천원이 증액(14.65%)된 447억 617만 6천원으로 편성됨.
-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 ⇒ 593,061천원 (성립전)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사업 ⇒ 5,422,995천원
- 산업 투자 유치 ⇒ △22,800천원
- 에너지 자립도시 ⇒ △277,222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p157, p5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2,895,563천원(국 1,411,061, 도 81,000, 군 1,403,502) <b>▶593,061천원 증</b></li> <li>○ [사업내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10% ~ 20%) 지원</li> <li>○ [증감사항]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li> </ul>
검토의견	<p>☞ 지역화폐 정책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촉진, 소상공인 매출 및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지방세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임. 2021년부터 중앙정부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이 시작됐는데, 실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p>

사업명	<b>투자유치(자체)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p158, p62)</b>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공무원에게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li> <li>○ [사업비] 4,000천원(군 4,000) <b>▶17,000천원 감</b></li> <li>○ [사업내용] 기업 활성화 간담회 및 견학 등 참석자 보상, 기업유치 기여 민간인 보상, 유공 공무원 포상</li> <li>○ [증감사항] 집행잔액 및 대상자 없음으로 감액</li> </ul>
검토의견	<p>☞ 기업활성화 간담회, 견학 등 참석자 보상금 55% 감액, <b>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 10,000천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2,000천원이 전액 삭감됨.</b></p> <p>☞ 해마다 민간인 보상금과 유공자 포상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9조 투자 유치 기여자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p>

사업명	<b>에너지 자립도시 일반 (p159, p65)</b>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및 시설물 관리</li> <li>○ [사업비] 1,800천원(군 1,800) <b>▶10,000천원 감</b></li> <li>○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가로등, LED조명 등) 유지 및 관리</li> <li>○ [증감사항] 집행 잔액 및 수요 없음으로 감액</li> </ul>
검토의견	<p>☞ <b>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예산 10,000천원 전액 삭감</b>인데, 사업 대상이 무엇인지, 태양광 가로등 및 LED 조명 유지관리는 안전총괄과 가로등 담당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지 설명 바람.</p>

## □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예산서 P163)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6,514,201	16,592,301	△78,100	△0.47

○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810만원이 감액(△0.47%)된 165억 1,420만 1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읍면지 편찬 ⇒ △79,000천원
- 거창 무릉리 정씨고가 대문 지붕보수 ⇒ 25,000천원 (성립전)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읍면지 편찬 (p163, p71)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적] 지역의 향토사를 집대성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애향심 고취 및 주민 화합의 계기 마련</li><li>○ [사업비] 161,000천원(군 161,000) ► <b>79,000천원</b> 감</li><li>○ [사업내용] 자료수집, 회의비, 홍보료 등</li><li>○ [증감사항] 사업지연에 따른 감액</li></ul>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지 편찬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종합적인 역사 기록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 수집, 전문가의 참여, 충분한 고증,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li><li>☞ 또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는 면지 편찬 사업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집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활용도가 낮거나 기존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경우, 한정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군에서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도 감독 역할이 필요해 보임.</li></ul>

## □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예산서 P167)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6,549,289	6,313,064	236,225	3.74

-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22만 5천원이 증액(3.74%)된 65억 4,928만 9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시범사업 ⇒ 250,000천원 순증
- 치유산업 육성 ⇒ △13,775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p167, p75)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적] 지역관광을 이끌어갈 관광전문 실행조직 및 인력 육성</li><li>○ [사업비] 500,000천원(국 250,000, 군 250,000) ► <b>250,000천원</b> 증</li><li>○ [사업내용] 지역관광협의체 조직 구성 서부경남 쉼터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li><li>○ [증감사항]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2025. 9. 23.)</li></ul>
검토의견	<p>☞ <u>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u>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특징: 거·함·산·합 컨소시엄으로 추진</li><li>- 사업시행: 거창대학</li><li>- 자금지원: 국비50%, 지방비50% * 거·함·산·합 공동부담</li><li>- 사업내용: 지역 특화 콘텐츠 사업 발굴, 마케팅, 전문가 자문 등</li></ul> <p>☞ <b>거창 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4개 군의 역할은 무엇인가?</b></p>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예산서 P179)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27,466,303	29,974,331	△2,508,028	△8.37
일반회계	26,377,288	28,909,748	△2,532,460	△8.76
특별회계	1,089,015	1,064,583	24,432	2.29

-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246만원이 감액(△8.76%)된 263억 7,728만 8천원으로 편성됨.
-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3만 2천원이 증액(2.29%)된 10억 8,901만 5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수급자 생계급여 ⇒ △1,018,741천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 △1,495,702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생계급여 (p173, p89)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적]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li><li>○ [사업비] 14,902,535천원(국 11,922,029, 도 1,490,253, 군 1,490,253) ▶ 1,018,741천원 감</li><li>○ [사업내용] 기초 생계비 지급</li><li>○ [증감사항] 2025년 생계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li></ul>
검토의견	<p>☞ 일을 하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일을 안 하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수급비로 생계난을 겪게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신청주의가 원칙인 제도의 특성상 정보에서 소외된 생계곤란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야 함.</p>

## 행복나눔과

<세출예산>(예산서 P179)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32,988,455	137,883,521	△4,895,066	△3.55

-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9,506만 6천원이 감액(△3.55%)된 1,329억 8,845만 5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기초연금 ⇒ △4,698,155천원
- 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 51,480천원 순증
- 재가시설운영 ⇒ △168,315천원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위한 교육 등 ⇒ 3,000천원 순증
-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 ⇒ 46,200천원 순증

## [주요 편성내용]

사 업 명	[성립전]호우피해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p180, p106)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법인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li> <li>○ [사 업 비] 51,480천원(군 25,740, 도 18,018, 군 7,722) ►순증</li> <li>○ [사업내용] 사면공사 재시공, 집수정·배수 트렌치 추가, 경계석 및 보도용 블록 설치, 난간 재설치</li> <li>○ [증감사항] 집중호우피해(7.16.~20.)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반영으로 인한 신규 편성</li> </ul>
검토의견	<span style="color: blue;">☞</span>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가 잦아지고 있음. 노인요양시설(거창시니어카운티)의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주기적인 시설 점검, 비상 계획 수립,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많으므로 특별 대피 계획이 필수적일 것임.

##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예산서 P199)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7,566,485	7,516,925	49,560	0.67

-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956만원이 증액(0.67%)된 75억 6,648만 5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성립전]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 360,000천원 순증
-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 △79,200천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167,000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달빛어린이병원) 사업 (p199, p156)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li> <li>○ [사업비] 360,000천원(국 180,000, 도 54,000, 군 126,000) ►<u>순증</u></li> <li>○ [사업내용] 인건비, 운영비</li> <li>○ [증감사항] 2025년 공모사업 선정</li> </ul>
검토의견	<p>☞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0년 17개소에서 2025년 7월말 기준 121개소로 7배 이상 급증, 현재는 전국 12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56개소(46.3%)가 수도권에 있어 지역 불균형이 존재함.</p> <p>☞ 재정난을 이유로 문을 닫는 지정 취소 병원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달빛'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야간 진료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도 늘고 있음.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p>

## □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예산서 P203)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4,127,589	4,043,299	84,290	2.08

○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429만원이 증액(2.08%)된 41억 2,758만 9천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62,345천원**
- 산후조리비 지원 ⇒ **27,999천원**

## [주요 편성내용]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p206, p167)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li><li>○ [사업비] 99,799천원(도 64,477, 군 35,322) ▶<b>62,345천원</b> 증</li><li>○ [사업내용]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li><li>○ [증감사항] 도비 보조금 증액 교부</li></ul>
검토의견	☞ <b>기정액 대비 사업비가 166% 늘었음. 연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b> 매년 연말에 도비 교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적기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낭비성 집행을 유도하기 쉬우므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읍·면사무소(예산서 P215)

(단위 : 천원)

읍 면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12,485,672	12,581,958	△96,286	△0.77
거창읍	2,715,193	2,779,646	△64,453	△2.32
주상면	834,300	835,794	△1,494	△0.18
웅양면	879,374	879,374	0	0.00
고제면	816,185	816,185	0	0.00
북상면	865,656	865,656	0	0.00
위천면	894,746	899,746	△5,000	△0.56
마리면	872,285	872,285	0	0.00
남상면	871,268	871,268	0	0.00
남하면	862,763	867,263	△4,500	△0.52
신원면	837,177	843,177	△6,000	△0.71
가조면	1,201,604	1,211,192	△9,588	△0.79
가북면	835,121	840,372	△5,251	△0.62